

의안번호	2215079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2.
추계번호	25A6949

인수·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, ②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3조)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원(연평균 6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3조)	250	—	—	—	—	250	50
합계	300	—	—	—	—	300	6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. 기업승계 관련 동향, 현황 및 전망 3. 기업승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.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기업승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,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야 한다.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8조(기업승계 및 성장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자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1. 기업승계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·회계 상담 지원 2. 경영·기술·재무 등의 자문 지원 3.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등 성장촉진 지원 4. 그 밖에 승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3	안 제10조(기업승계 촉진제정의 설치 등)	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촉진제정(이하 “제정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1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, 제9조,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3. 그 밖에 제8조, 제9조,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25조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·지출 및 운용과 회계·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4	안 제11조(자금지원 등)	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융자, 투자, 출연, 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 ②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 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지원을 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	재량규정
5	안 제12조(기업승계 지원센터 지정)	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기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.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,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.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. 외국 사례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. 기업승계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·운영 6.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업자 정보의 유지·관리 7. 그 밖에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승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의 효율화를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위하여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.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.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, 기업승계 플랫폼의 구축·운영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6	안 제13조(기업승계 실태조사)	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승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3조에 따른 기업승계 중개업자,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, 시기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7	안 제14조(조세에 대한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	재량규정
8	안 제22조(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)	기업승계로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기업이 합병된 경우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양수 또는 합병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부터 다음 보험연도까지 양수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25조(비용 보조 등)	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업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, 기업실사 수수료, 중개 자문료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승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지원 기준·절차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
1	안 제7조(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-						
2	안 제13조(기업승계 실태 조사)	○							
3	안 제8조(기업승계 및 성장 지원)	×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 및 성장지원사업, 기업승계촉진계정의 설치, 자금지원, 지원센터 지정, 조세 감면, 고용보험료율 특례, 기업승계 절차 비용 보조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‘벤처캐피탈선진화’ 사업 중 ‘기업승계M&A지원’의 내역사업에서 컨설팅, 매칭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						
4	안 제10조(기업승계촉진계 정의 설치 등)	×							
5	안 제11조(자금지원 등)	×							
6	안 제12조(기업승계지원 센터 지정)	×							
7	안 제14조(조세에 대한 특례)	×							
8	안 제22조(고용보험료율에 대한 특례)	×							
9	안 제25조(비용 보조 등)	×	<table><tr><th>세부사업－ 내역사업 (회계, 코드)</th><th>사업개요</th><th>2026년 예산 (백만원)</th></tr><tr><td>벤처캐피탈선진화－기업승계M&A지원(일반회계, 5231－302)</td><td>CEO 고령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M&A형 기업승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확산(간담회, 권역별 설명회), 수요발굴(기초·종합 컨설팅), 매칭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수행</td><td>850</td></tr></table> 자료: 중소벤처기업부	세부사업－ 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사업개요	2026년 예산 (백만원)	벤처캐피탈선진화－기업승계M&A지원(일반회계, 5231－302)	CEO 고령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M&A형 기업승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확산(간담회, 권역별 설명회), 수요발굴(기초·종합 컨설팅), 매칭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수행	850
세부사업－ 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사업개요	2026년 예산 (백만원)							
벤처캐피탈선진화－기업승계M&A지원(일반회계, 5231－302)	CEO 고령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M&A형 기업승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확산(간담회, 권역별 설명회), 수요발굴(기초·종합 컨설팅), 매칭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수행	850				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①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7조), ②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3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-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 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M&A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활성화 방안 연구”(중소벤처기업부, 2024년, 5,000만원) 등이 있음
 -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7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업승계 실태조사(안 제13조)

-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2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 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실태조사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－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실태조사 실시 사례로는 「기술혁신형기업 정밀실태조사」(2025년, 1억 5천만원)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」(2025년, 3억원), 「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」(2025년, 3억 2,200만원) 등이 있음
 - 제정안에서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,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주기와 같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업승계 실태조사 (안 제13조)	250	—	—	—	—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assembly.go.kr